

4 재정운용계획

4-1. 성인지 예산현황

☐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,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.

-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.

☐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, 아래의 표에서는 영양군의 2017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,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(단위 : 개, 백만원)

구 분	사 업 수	예 산 액
총 계	28	3,744
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추진사업	6	123
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	20	3,459
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	2	162

- ▶ 2017년 당초예산 기준
- ▶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([바로가기](#))

☞ http://www.yyg.go.kr/www/organization/finance_info/gender_budget

●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이란 ?

-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.
- 여성능력개발교육,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,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등이 해당합니다.

●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란 ?

-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분석, 평가를 받는 사업을 말합니다.
- 정보화교육, 지역정보화 촉진, 공무원 교육훈련, 공무원 직무교육훈련 등이 해당합니다.

●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?

-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,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

4-2. 주민참여 예산현황

☐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. 참여범위는 예산편성과 관련된 주민의견 수렴, 지역 내 소규모 주민편의사업 선정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. 참여방법은 주민회의, 군민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, 팩스,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.

- 지역실정에 맞는 모델을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는데 영양군은 모델 1을 채택하여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.

(단위 : 백만원)

당초 세출예산	주민참여로 반영된 예산	모델
239,700	4,684	모델안 1

▶ 2017년 당초예산 기준

❖ 표준모델

구분	모델안 1	모델안 2	모델안 3
총 칙	제1조(목적) 제2조(용어의 정의) 제3조(법령준수의무) 제4조(시장의 책무) 제5조(주민의 권리)	제1조(목적) 제2조(용어의 정의) 제3조(법령준수의무) 제4조(군수의 책무) 제5조(주민의 권리)	제1조(목적) 제2조(용어의 정의) 제3조(법령준수의무) 제4조(구청장의 책무) 제5조(주민의 권리)
운영계획	제6조(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) 제7조(의견수렴 절차 등) 제8조(의견 제출) 제9조(결과 공개)	제6조(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) 제7조(의견수렴 절차 등) 제8조(의견 제출) 제9조(결과 공개)	제6조(운영계획 수립 공고 및 적용범위) 제7조(의견수렴 절차 등) 제8조(의견 제출) 제9조(결과 공개)
위원회	제10조(위원회 운영 등)	제10조(주민참여예산위원회) 제11조(위원회의 기능) 제12조(위원회 구성) 제13조(위원회의 운영) 제14조(연구회 운영 등)	제10조(위원회 구성) 제11조(위원의 위촉 및 임기) 제12조(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) 제13조(기능) 제14조(운영원칙) 제15조(분과위원회) 제16조(회의 및 의결) 제17조(회의록 공개의 원칙) 제18조(해촉) 제19조(의견청취) 제20조(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) 제21조(주민참여 등 홍보) 제22조(위원에 대한 교육) 제23조(재정 및 실무지원)
지원 기타 부칙	제11조(시행규칙) 부칙	제15조(시행규칙) 부칙	제24조(시행규칙) 부칙



❖ 2017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

(단위 : 백만원)

부서명	사업명	예산반영액	비고
총 액		4,684	
주민생활지원과	영양군청소년수련건립확충사업 (수영장 설치)	1,250	신규사업
새마을경제과	산해1리 마을안길아스콘덧씌우기 공사	100	"
문화관광과	문화재지킴이 활동비 지원	10	계속사업
"	도지정문화재 특별관리비 지원 사업	15	"
안전재난건설과	군도정비사업	1,857	"
"	농어촌도로정비사업	1,076	"
"	행복택시 요금보조	300	"
"	특별교통수단(이동지원센터) 운영 지원	76	신규사업

▶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([바로가기](#))

☞ http://www.yyg.go.kr/www/organization/finance_info/revenues_expenditure

4-3. 성과계획서

- ☐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,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.
- ☐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, 아래의 표에서는 영양군의 2017년 성과계획서 목표수, 단위사업수,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(단위 : 개, 백만원)

부서명	성과계획				예산액		
	전략 목표수	정책사업목표 개수	지표수	단위사업수	예산액	전년도 예산액	비교 증감
계	17	57	151	136	239,700	241,000	△1,300
기획감사실	1	2	8	7	12,210	7,460	4,750
주민생활지원과	1	9	33	20	32,724	30,008	2,716
새마을경제과	1	6	19	15	20,435	18,664	1,771
문화관광과	1	4	14	7	11,964	19,920	△7,956
환경보전과	1	5	14	11	28,348	38,062	△9,714
농정과	1	1	5	10	27,549	23,029	4,520
산림축산과	1	4	6	7	9,497	10,619	△1,123
안전재난건설과	1	5	7	11	18,785	16,563	2,221
민원봉사과	1	3	7	6	1,070	826	244
재무과	1	2	5	6	28,515	27,205	1,310
총무과	1	5	11	11	15,358	14,370	988
미래전략사업추진단	1	3	3	3	15,467	16,423	△956
보건소	1	1	5	7	4,494	4,309	184
농업기술센터	1	2	7	8	4,121	4,022	99
의회사무과	1	1	2	2	630	627	4
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	1	2	3	3	2,529	2,508	21
시설관리사업소	1	2	2	2	1,188	1,639	△451
영양읍	0	0	0	0	1,203	1,182	21
입암면	0	0	0	0	712	709	3
청기면	0	0	0	0	739	719	20
일월면	0	0	0	0	683	650	33
수비면	0	0	0	0	741	746	△5
석보면	0	0	0	0	737	741	△4

- ▶ 당초예산, 일반+기타특별회계
- ▶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([바로가기](#))

☞ http://www.yyg.go.kr/www/organization/finance_info/result_plan

4-4. 재정운용상황개요서

- 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.
- ☐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, 재정자주도,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,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, 인건비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(단위 : %)

재정자립도	재정자주도	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	자체사업비율	보조사업 비율	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
13.63	71.07	15.55	34.3	41.92	329.22

- ▶ 당초예산, 일반회계 기준
- ▶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([바로가기](#))

☞ http://www.yyg.go.kr/www/organization/finance_info/revenues_expenditure

4-5.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

-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「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(행자부 훈령)」에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으며, 기준경비에 대한 예산편성 현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.
- 예산편성 기준별 운영상황은 업무추진비, 의회관련 경비, 공무원 일·숙직비,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(단위 : 백만원)

항목별		기준액 (A)	예산편성액 (B)	차액 (B-A)
기관운영 업무추진비	단체장	40	40	0
	부단체장	28	28	0
시책추진 업무추진비		205	205	0
지방의회 관련경비	의정운영 공통경비	40	40	0
	의회운영 업무추진비	38	38	0
	의원국외여비	22	22	0
지방보조금		11,108	8,256	△2,906
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		401	401	0
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		965천원	715	-
공무원 일·숙직비		일직,숙직5만원 재택숙직 3만원	452	-

- ▶ 기준액 산출기준은 '2017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(행정자치부)'을 참조하세요(<http://lofin.moi.go.kr>)
- ☞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및 공무원 일·숙직비 기준액은 1인당 금액입니다.
- ☞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: 나군 기준액 군수 39,600천원, 부군수 27,500천원
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: 경상북도 책정금액 205백만원
 의정운영 공통경비 : 전체의원 7명, 기준액 4,800천원 및 예결위 6명, 기준액 1,000천원
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: 다등급 기준액 의장 2,100 부의장 1,050 예결위원장 640천원
 의원국외여비 : 2,000천원/인(기준액 25%범위 내 자율조정,예외 한도액 30%범위 내 추가편성)
 통리장 : 기본 200,000원/월, 회의참석수당 1회 20,000원/월 2회, 반장 : 연 50,000원,

4-6.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(세출 효율화)

- 보통교부세 자체노력(세출 효율화)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(세출 효율화)에 반영한 금액입니다.
-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.

(단위 : 백만원)

반영항목	기준재정수요 반영액	
	2016년	2017년
계	219	2,862
인건비 절감	4	13
지방의회경비 절감	27	29
업무추진비 절감	46	43
행사·축제성경비 절감	△758	1,048
지방보조금(민간이전경비) 절감	105	1,729
지방청사 관리·운영	795	0
읍면동 통합운영	0	0
민간위탁금 절감	0	0

- ▶ 2017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(2016. 12. 30. 교부),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
- ▶ (+) 인센티브, (-) 페널티

4-7.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(세입확충)

- ☐ 보통교부세 자체노력(세입확충)이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(세입 확충)에 반영한 금액입니다.
- ☐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.

(단위 : 백만원)

반영항목	기준재정수입 반영액	
	2016년	2017년
계	△239	△741
지방세 징수율 제고	△4	△146
지방세 체납액 축소	△212	△344
경상세외수입 확충	107	△150
세외수입 체납액 축소	△19	△101
탄력세율 적용	△111	0
지방세 감면액 축소	0	0

- ▶ 2017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(2016. 12. 30. 교부),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
- ▶ (+) 인센티브, (-) 페널티

4-8.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

- ☐ 2016년에 우리 영양군의 지방교부세 감액은 해당사항 없습니다.

4-9.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

- ☐ 2016년에 우리 영양군의 지방교부세 인센티브는 해당사항 없습니다.